

1. 개정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예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저상버스 도입의 예외신청)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선의 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의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노선 중 저상버스의 도입이 곤란한 지점의 도로의 구조·시설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또는 사진자료 1부

3. 그 밖에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의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를 승인할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신청 수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예외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⑥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청된 노선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1.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저상버스 도입의 예외신청)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선의 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의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노선 중 저상버스의 도입이 곤란한 지점의 도로의 구조·시설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또는 사진자료 1부 3. 그 밖에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의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를 승인할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신청 수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예외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⑥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청된 노선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1.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